

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김 현 희



비교법제 연구 13-20-⑫

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김 현 희

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ESS) of France

연구자 : 김현희(부연구위원)
Kim, Hyun-Hee

2013.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II.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
 -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 이후 다수의 민중이 노동착취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

게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

-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ESS)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범위

○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회”, “재단”으로 파악

-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 궁극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경영 자율성

○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현황

○ 2009년 기준, 21만5천여 개의 조직이 2천3백만 명(전체 일자리의 10%)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를 위한 조직의 90%를 운영하고 양로원의 45% 및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60% 이상 담당

○ 교육부에서 340,000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전체 고용의 21%)

- 보건부문에서 의료복지요양시설 등 재단은 7만 명의 임금근로자 고용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법제

-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 협동조합법
 - 개별 협동조합법
 -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소위 협동조합일반법)
-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

□ 한국의 사회적경제 법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8개 개별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기본법

□ 프랑스 사회적경제법안의 시사점

- 국민(대중), 경제주체 및 당국의 눈에 맞추어 경제적 모델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ESS의 개념 및 그 범위와 특수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ESS의 경제적 모델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네트워크를 중시
-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관과 정책의 일체화를 도모
 - 특히 협동조합의 범주에서 ESS의 지원 내지 자원조달에 관한

공공정책을 집약하여 임금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

- 공공투자은행을 동원하여 경제적 지원하며 ESS기업을 위한 적립금 활용의 방향을 제시
- 공적 수요와 안정적 후원을 통한 재원조달 등을 보장

Ⅲ.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인정하며,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주제어 : 사회적경제, 결사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프랑스 사회적경제법안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knowledge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intend to protect sound commercial rights of their own market and nation against the gigantic commercialism, the product of extreme competition system, through social economy, the component of the economy.
- France took a step further from acknowledging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its role and functions in terms of policy and announced the Social Economy Bill in 2013 in order to acknowledge and institutionalize it legally.
- It must ha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tatus of Korea where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self-sufficient economy and mutually supporting economy such as the creation of jobs for the vulnerable cla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I . Major Contents

- Concept of Social Economy
 - Economic Activity with Social Purpose

- The term was used first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o criticize the existing economics which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agony of most people caused by the exploitation of labor and poverty after the initial capitalism which began to grow in full scale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 Understood as Social Solidarity Economy (ESS) in France

Scope of Social Economy

- In France, ESS is understood as “cooperative”, “mutual”, “association”, and “foundation”
- In Korea, ESS is understood as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community enterprise”, “self-sufficient enterprise”, and “non-profit organization”

Operating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 “The ultimate goal is the service to the members or local community, not the pursuit of profits”, “management autonomy”, “democratic control by members”, “people and social purpose have precedence over capital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the surplus”

Social Economy in France


- As of 2009, 215,000 organizations employing 23 million (10% of all jobs) paid workers, and particularly, operates 90% of the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and 45% of nursing homes and 60% of welfare service for individuals

- Employed 340,000 paid workers in the education field (21% of all employments)
- Foundations in the health field such as medical welfare and nursing facilities are employing 70,000 paid workers
- Social Economy Related Legal System of France
 - Association Act in 1901
 - Cooperative Acts
 - Individual Cooperative Association Act
 - Act on the Status of Cooperatives in 1947 (so called “General Act on Cooperatives”)
 - Social Economy Bill in 2013
- Social Economy Related Legal System of Korea
 -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 Regulations of 8 individual cooperatives
 -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 Implications of France’s Social Economy Bill
 -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scope,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SS in the law to recognize and give values to the economy model at the level of the nation (public), economic subjects, and the authority.

- Emphasis on education and network for the enhancement of ESS's economy model
- Promotion of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 and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y
 - Especially, the bill summarized public policies about ESS support or funding within the scope of cooperative association and abolished the restriction on paid workers in acquiring a company.
- Mobilization of public investment bank for economic support and suggestion of the direction for the use of the reserve for ESS enterprises
- Securing of funding through public demand and stable support

III. Expected Effects

- Examining France's effort to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by law, recognize its socioeconomic function, and vitalize the social economy through inclusive legislation will give a sense of direction about how to develop social economy in Korea.

 **Key Words** : Social Economy, Association,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French Social Economy Bill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 2 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19
제 1 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19
I. 개념의 유래	19
II. 제도화 과정	20
제 2 절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	23
I. 사회적경제의 법적 지위	23
II.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24
제 3 절 사회적경제의 기능	26
I. 일반적 기능	26
II.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27
제 4 절 사회적경제의 구성조직(범위)	29
I. 협동조합	31
II. 사회적기업	34

제 3 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39
제 1 절 현 황	39
제 2 절 관련 법제	47
I.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47
II. 협동조합법	49
III. 2003년 사회연대경제법(안)	57
제 4 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제	71
제 1 절 발전과정	71
제 2 절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	75
I. 사회적기업 육성법	75
II. 협동조합기본법	78
제 5 장 결 론	85
참 고 문 헌	89
부 록	95
부 록 I: 사회적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의회 결의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97
부 록 II: 프랑스의 2013년 4월 26일자 사회연대경제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10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라는 용어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가 그 야만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중이 극심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빈곤으로 고통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¹⁾ 20세기 후반에 들어 결사체주의(associationnisme)의 정신을 계승하며 제도화된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를 “연대경제”(économie solidaire)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곳도 프랑스이다.²⁾

국가별로 명칭이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통상 공공부문인 ‘국가영역’이나 사적 영역인 ‘시장영역’에 속하지 않는 ‘시민사회영역’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으로서, 제3섹터(the Third Sector),³⁾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원활동

-
- 1) 김신양,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2011년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2. 10, 13면. 사회적 경제는 기존 경제학이 고려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 즉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 사회적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다. 앞의 글, 8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신양, “다른 경제의 희망”, 진보신당 사회적경제 활동가 워크숍 자료, 2011, 13면 이하 참조.
 - 2)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2, 2010, 109면 참조. 다만 프랑스에서는 “제3섹터”라는 용어가 공공부문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그것은 제3섹터가 자선 및 자원활동에 근거한 박애정신을 강조하여 그 영역을 비영리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에 따른 거부감 때문이라고 한다.
 - 3) 다만, 미국의 ‘비영리부문’과 유럽의 ‘제3섹터’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의 비영리부문은 클럽단체, 전문가조직, 대학, 병원 등을 포함하여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자원활동의 총체라는 점에 초점을 두지만, 유럽의 제3섹터 개념은 이익배분에 제한을 두는 모든 조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 점이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이다. 그 밖의 차이에 관하여는 정관영,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희망경제론』, 공동체, 2013. 1, 183면 이하.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혹은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시민경제(Civil Economy)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4)5)6) 나아가 최근에는 사회운동의 영향을 통해 발생하고 확산된 마이크로크레딧, 공정무역, 지역화폐, 사회적관광 등 다양한 민간의 이니셔티브들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7)

보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사회적경제는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며,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 창출이 아닌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여 호혜성과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8)9) 참고로, OECD(1999)는 “사회적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

4) <http://www.oecd.org/cfe/leed/17017950.pdf>

5)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프랑스에서 주로 쓰는 사회연대경제는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이탈리아 학자들이 선호하는 시민경제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상징한다.

6)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 대중경제, 비영리조직, 제3섹터 등 관련개념의 정의와 구체적인 조직형태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경수,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ILO 사회연대경제아카데미의 2011년 간행물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Our common road towards Decent Works의 제1장 번역본),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7-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3. 4. 30, 16-20면 참조.

7)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총서 02, 2008, 10면.

8)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http://blog.makehope.org/smallbiz/522>)

9) 유럽에서는 ‘비영리부문’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세기 사회운동을 거쳐 투자자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주체들, 즉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등이 소유권을 가지는 조직의 존재가 합법화되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본질적 특징은 비영리성에 있기 보다는 자본출자자의 물질적 이익에 ‘제한’을 둔다는 점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리집단이나 비영리집단이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혹은 개인의 투자회수보다 공동자산의 형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이나 라고 할 수 있다. 장-루이 라빌 저, 김신양 역, “유럽의 사회적·연대의 경제”, 2000, 2면. <http://blog.daum.net/alter-economie>

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⁰⁾

정확하게 어떠한 용어로서 사용하는지 차치하고라도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하나의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 중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노력한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프랑스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후원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경제재정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에서 「사회연대경제(ESS)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상원에서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6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 < 사회적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 >**
- 사회적경제의 국가적 가치 인정 및 국내 경제의 한 축으로 확립
 -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의 확립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협동조합 모델의 현대화
 - 협동조합 발전기금 창설
 -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하는 인식확산 계획의 수립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설립

10) 최석현·김군수·이재광,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 & 진단 제73호, 2012. 11. 21, 3면에서 재인용.

이는 그동안 기존에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중앙정부가 작성한 법안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와 기능 내지 국가적 가치를 명실공히 인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근거를 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적인 축으로서의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그들의 재정활동에 관한 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주체 간 사회연대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일부분으로서 사회 전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이외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과 그에 관한 법제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의 관련 법제와, 특히 2013년 제정을 앞두고 있는 사회연대경제법안(이하 ESS법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과 시장의 교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파악된다. 더욱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기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사회적경제, 특히 오래 전부터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다져 온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를 현재 이곳에서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발전과정과 결실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일정한 연구의 범위가 설정되고 그를 통한 적절한 시사점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일반론으로서의 이론과 발전과정 등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 자료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그 경과 정도만 살펴보고자 한다(제2장). 본 연구의 핵심은 프랑스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것이기에 제3장에서는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1901년 결사체법으로부터 다양한 개별 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에 대하여 그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2013년 프랑스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법의 대표적인 법률인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 의의와 함께 프랑스 사회적경제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다(제4, 5장).

규범적인 연구조차도 그 나라의 다양한 환경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여야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이 분야를 전공으로 연구한 김신양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워크숍과 자문을 거쳐 제도의 소개에 오해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제 2 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제 1 절 사회적경제의 개념

I. 개념의 유래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전반 학문의 영역에서 최초로 그 개념이 등장한 이후 부문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학문의 영역에서 부활하고 있다. 1830년대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19세기 후반에 왈라스(L. Walras) 및 지드(C. Gide)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프랑스 경제사상가 샤를르 지드(Charles Gide)가 사회적경제의 세 가지 범주로서 기업(기업의 사회적 공헌), 결사체(노동조합,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공공규제(사회적 입법 등) 등을 언급하면서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관을 설치하면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 프랑스에서 상호공제조합, 유사성격의 민간단체를 총괄한 개념으로 1977년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이 개념이 공식화되는 등 20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제도화를 겪으며 일반 자본주의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여겨졌다.¹¹⁾

최근의 사회적경제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라빌(J-L. Laville) 등에 의하여 ‘연대경제(économie solidaire)’로 재탄생하였다. 연대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현재 프랑스, 브라질 뿐 아니라 세계사회포럼과

11) 최석현·김군수·이재광, 앞의 보고서, 3면.

같은 세계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활동 전체’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¹²⁾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제도화된 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와 새로이 등장한 이러한 연대경제를 결합하여 ‘사회연대경제(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이하 ESS)’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³⁾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는 같듯이 존재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프랑스 정부가 사회적기업 및 제3섹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관련부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¹⁴⁾

II. 제도화 과정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경제조직은 70년대 초부터 연합조직을 구축하며 사회적경제부문으로 인정되었다. 1970년에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이 연합한 후 1976년에 결사체까지 확장되면서 1980년에 ‘전국 공제조합·협동조합·결사체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s, CNLAMCA)가 창설되어 프랑스

12) 즉, 연대경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참여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장-루이 라빌 저, 김신양 역, “유럽의 사회적·연대의 경제”, 2000. 11. 146면.

13)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 개념’은 연대경제 및 민중경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단, 본고의 맥락에서 프랑스 고유의 상황이 반영된 제도 및 정책, 또는 조직의 명칭에 각각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원문에 충실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14) 녹색당 출신 아스코에(Hascoët)가 책임자로 등용되면서 광범위한 지역별 논의 및 자문과정을 거친 후 그의 직위를 ‘사회연대경제’장관으로 확정하면서 같듯이 일단락된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사회적경제조직연합과 연대경제조직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학계를 비롯한 공식적인 장에서는 이 두 흐름을 통합하는 ‘사회연대경제’로 명명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이러한 동향은 유럽 각국의 연구자 및 실천활동가집단에 영향을 미쳐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김신양,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10. 4, 48-49면.

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1977년 당시 CNLAMCA는 이미 20만 명의 피고용을 둔 2천만 명의 조합원(회원)을 포함하는 조직을 형성한 후 1980년에 ‘사회적경제 헌장’을 제정한 것이다. 1981년 사회당 정부가 ‘사회적경제 대표부(Délégation à l'économie sociale)’를 두면서 사회적경제는 프랑스 법의 규제대상이 되며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6년 ‘경제사회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CEE)’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인정을 강화하였다. 이 보고서에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발성”과 “민주적 운영”, “비영리”라는 공통의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정의되었다. 1989년 CEE는 국무위원회에 사회적경제조직연합을 인정하는 관보를 발표하였으나 유럽차원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CMAF)연합’으로 표현하였다.

1991년에 이르러 CNLAMCA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간에 봉사하기 위한 연대의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창출된 이윤은 인간을 위한 봉사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일반기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함을 발표하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3섹터를 육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사회당과 녹색당, 공산당의 연합정부가 구성되어 ‘새로운 서비스-청년일자리’ 정책을 실시하면서이다. 이 정책은 선거 전 사회당과 녹색당 간의 협약에 기초한 ‘공동정책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부문 및 공공부문 외의 영역인 사회적 목적과 환경적 목적을 가지는 제3섹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를 지원한다. 이 섹터의 구축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부여하며, 그 한계를 정하고 공급 정책을 장려하고(공공조달에 사회적 조항 삽입), 투명성을 위한 규칙

을 수립하고(중앙감사위원회/광역감사원), 자원봉사의 지위를 정하고, 고용센터와의 협약을 조직한다... 그러나 지체없이 최저소득보장은 18세에서 25세의 청년으로 확대될 것이다.”¹⁵⁾

이 협약에 기초하여 당시의 고용연대부는 ‘청년일자리(emplois-jeunes)’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제3섹터 육성에 큰 진전을 보인 정책이다. 이 법의 정신은 제3섹터가 새로운 활동분야 발굴에 복무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시장과 국가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필요 - 환경, 근린서비스, 초등학생지원, 지역 활성화 등 - 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즉 지역사회, 지역사회 간, 그리고 지방 간 사회관계 재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1997년 10월 6일 청년일자리는 ‘새로운 서비스 - 청년일자리(Nouveaux Services - Emplois-Jeunes)’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특성은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새로운 필요에 더하여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특성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서비스 - 청년일자리’가 제3섹터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면 제3섹터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언급은 1998년 제정된 ‘반소외법(La loi d'orientation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exclusions)’의 제11조 4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는 활동을 개발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협약조건은 법규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3섹터는 활동의 복합성(상업성 + 사회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제3섹터 조직을 포괄하기 보다는 자활지원을 위한 노동통합조직을 겨냥하며, 법적지위를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상업적인 이유로 주식회사의 지위를 취한 다수의 노동통합조직이 배제되는 문제를 노출하

15) Lipietz, 2001, p. 69를 김신양, 앞의 워크숍 자료, 51면에서 재인용.

였다. 그리하여 2001년 7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공익협동조합(SCIC)’이 제정되기에 이른다.¹⁶⁾

2001년 지방선거 이후 이를 담당하는 300여 명의 지방의원이 등장하였으며, 2004년 광역지방선거 이후 1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역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¹⁷⁾

제 2 절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

사회적경제의 본질 및 특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법적 지위”와 “운영원칙”의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I. 사회적경제의 법적 지위

사회적경제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법적 방식으로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coopératives)”, “공제조합(mutuelles)”, “협회(associations)”,¹⁸⁾ “재단”(fondations) 이라는 (협회와 재단을 통합하여) 3~4가지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¹⁹⁾ 이 네 종류의 유형은 그 목적에 따라 종업원으로 구성된 것(노동자 협동조합), 이용자로 구성된 것(소비협동조합, 보험공제, 의료공제조합, 협회), 기업가로 구성된 것(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직능인 협동조합, 소매업 협동조합)과 같은 형식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모인 것이다.

16) 김신양, 앞의 워크숍 자료, 51-52면.

17) 노대명, 앞의 보고서, 109-110면.

18) association은 결사체로서 우리의 “법적” 용어로는 사단 정도가 되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사단과 재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19)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단체 및 조직으로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언급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 4가지 형태 외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개인과 법인의 활동주체가 그룹화한 혼합형(예: 사회적 공익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몇 개의 유형이 모인 사회적 경제연합회도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II.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은 ① 그 궁극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② 경영 자율성, ③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④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봉사”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게는 지역사회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²⁰⁾ 즉,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막론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이윤의 추구보다는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적하는 점, 공공프로그램과는 다른 자율적인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자본과 이윤의 배분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1 -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운영 메카니즘>

	결사체	공제조합	협동조합
기능	회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원과 회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원(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제공

20) 김신양, 앞의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5면.

	결사체	공제조합	협동조합
활동	비시장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장재화 및 서비스 증가 추세	- 주로 비시장 서비스 제공 - 조합원은 각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수혜	- 시장 재화 및 서비스 생산 - 조합원은 거래량에 따라 수혜
회원	개인 및 법인	개인	개인 및 법인
의사원칙	1인1표		
재정	- 회비 또는 기부 - 회원 탈퇴시 납입 금액 상환불가	- 정기조합비 - 조합원 탈퇴시 납입금액 상환불가	- 출자금 청약 및/또는 정기기여 -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상환
잉여금의 처리	- 회원 분배불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재투자 의무	- 조합원 분배불가 - 준비금을 구성 및/또는 조합비 인화 또는 편익 증가	- 일부 조합원에 배당 - 서비스 향상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준비금 구성 가능

출처 : 김신양·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9. 11, 14면.

참고로,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사회적경제의 공통적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p>사회적경제 4유형의 공통 원칙</p> <p>-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회, 재단 -</p> <p>- 민주적 운영 : “1인=1개 의결권”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각 회원은 협</p>

21)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f_id=ip1342

동조합 자본에 참여한다. 협회에서의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의결권을 동일하게 가진다.

- 연대성 : 사회경제부문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 초과 수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 : 영리성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경제기업의 행위자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상한선 내에서 자체적 기금으로 이를 적립함에 따라 초과수익을 분배하지는 않는다.
-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 공공단체, 그룹, 연금재단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시설도 사회경제기업을 지배할 수 없는데, 이는 주식에 상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가입의 자유 : 사회경제기업에 대한 가입은 전적으로 자유로우며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도 이를 허가한다.

제 3 절 사회적경제의 기능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009년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을 살펴보면 그 조직원리와 기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I. 일반적 기능

- 사회적경제는 수익성과 연대를 통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경제, 지역의 화합을 강화하고 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능동적 시민의식과 연대, 인본을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를 담은

22)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language=EN&reference=P6-TA-2009-0062>

경제 형식을 증진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경제, 기술 혁신을 지원하여 유럽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적경제는 산업민주주의 및 경제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상징적으로나 성과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 사회적경제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전할 수 있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의 특수성과 풍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정치적, 입법적, 경영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과 동일한 경쟁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고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안정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제도는 일부 민간 기업이 주주나 규제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의 투기에 대한 노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I. 리스본 전략 목표²³⁾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은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체계의 민주적 기능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며 취약 부문의 적극적인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사회적경제 소속의 사용자는 중요한 재통합 주체임을 강조하고 양질의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근로자에 투자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를 지지 및 강화하고 이들의 특수한 지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23) 2000년 3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합의, 서약한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말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699&cid=200000000&categoryId=200002722>

제 2 장 사회적경제 일반론

- 사회적경제는 3대 노동시장 불균형, 즉 실업과 고용 불안정, 실업자의 사회 및 노동 시장에서의 소외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탈국지화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는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는 사회정책을 입안하는 지역사회 및 당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연대 네트워크에 대한 진정한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
- 사회적 문제는 성찰을 촉구하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행동이고, 실제 상황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다수 사회문제는 현지 해법을 통해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조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한 바, 공공당국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경제는 특히 여성고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무수한 불균형에 대처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조성 및 유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예, 사회,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완전고용이라는 리스본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유럽연합은 이익을 현지에서 재분배 및 재투자하고 적절한 기업문화를 장려하고 경제활동과 지역의 요구를 연계하고 위기에 처한 활동(예: 공예)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함으로써 다분히 순환경제의 맥락에서 안정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능력을 감안하여 지역과 EU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의제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원국 정부와 지방, 동 부문의 사업자는 참여와 협의, 공동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와 사용자가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를 장려 및 지원하여야 한다.
-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지원정책을 검토할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조직은 특히 작금의 경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할 뿐 아니라, 금융 및 유통 부문에서 상호성 원칙이나 회사 민주주의, 자산의 세대 간 이전, 준비금과 연대, 직업윤리, 기업윤리의 불가분성을 토대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과 같이 국가 회사법이나 회계 규정을 차단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은 역내시장에서 활동하고 국가 및 EU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영세기업이나 소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들이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 시 기업을 근로자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대상 지원과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금융지원과 정보, 자문, 교육을 제공하는 예비 및 기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립 과정을 간소화하여(회사설립의 최초자본요건의 완화 포함) 이들이 갈수록 세계화되고 있고 현재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절 사회적경제의 구성조직(범위)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라 함은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법적 방식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 내지 사단”, “재단”이라는 네 가지 유형을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²⁴⁾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단체 및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꼽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 사회적 경제의 범위>



출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2013. 7, 12면.

24) 프랑스의 통계청(INSEE)에서 수집하는 “사회적경제”(ESS) 관련 정보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법적 형식으로 나뉘어져 수집된다.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g_id=0&ref_id=ip1390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도 사회적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단위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라고 할 수 있기에 이 두 유형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으로 일컬어지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²⁵⁾

협동조합은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운영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이기에 협동조합의 원칙이란 협동이라는 인류의 오랜 지혜가 체화된 것으로서 협동 진화의 규칙들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에서 발표한 다음의 7 원칙을 살펴보면 그 본질적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ICA가 정리한 협동조합의 운영 7원칙

I.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다. 개방성은 정보 비대

25) <http://www.cooperatives.go.kr/>

26) 정태인·이수연,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미디어, 2013, 196면.

칭성을 극복함으로써 간접 상호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외부에 배타적이지 않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II.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내가 협동한다 해도 남이 배신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줄여줄 것이다. 협동하지 않는 이에 대한 다수의 응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잘 되는 협동조합이라면 이미 협동의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응징의 필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III.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 인류 최초의 사회적경제는 식량을 공유하는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보험인데 1800년대 중반에 출현한 농민의 협동조합 금융은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원 또는 자본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집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인 ‘비분리 자산 indivisible reserve’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IV.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협동조합이 정부나 시장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협동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구성원의 자발성은 줄어들 수도 있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도덕 감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V.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주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공유 가치를 확산하여 집단 정체

성을 높이고 간접 상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교육을 통해 기술적 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협동은 때때로 내적 생산성 향상 수단인 경쟁과 대립되는데, 교육과 훈련, 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VI.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동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증가시킨다.

VII.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간접 상호성과 네트워크 상호성을 촉진시키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치는 커지게 된다.

협동조합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로서 이탈리아의 경우, 낙후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공급자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지역분권적인 경제공동체로 출발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²⁷⁾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²⁸⁾

27) 이탈리아는 새로운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으로 수렴되었던 것에 비해, 프랑스는 협동조합 자체보다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개념의 복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 주체가 재구성되고,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실험들이 민간단체의 지위를 통해 등장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원종욱·김태완·김문길·윤문구·엄형식·윤시몬·임완섭·정은영,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44, 2012, 33면.

28) France Basaglia 홈페이지(<http://www.francobasaglia.org>)의 내용을 최석현·김군수·이재광, 앞의 보고서, 5면에서 재인용.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는 재정여력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능력을 약화시켜 기존 협동조합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당시 베니스 북부에 위치한 트리에스테에서는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자리아(Franco Basaglia)가 앞장서서 정신장애자의 격리 입원을 격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78년 법제정을 계기로 이들 정신병원이 차례로 폐쇄되었는데, 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협동조합이 나서 정신장애 및 약물 의존증 환자, 이민자, 장기실업자, 노숙자, 출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후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은 영국으로 건너가 사회적 회사(Social firm), 즉 취약계층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었다.

II.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유럽의 산업화 및 근대화와 맞물리면서 발전한 200여년의 전통을 가진 부문인데 반하여,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1990년대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 기원에 있어서 고유의 조직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회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취약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시킨다는 관점에서 영리적 자원과 비영리적 자원을 혼합하는 사업을 가리켰으나, 점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는 조직들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²⁹⁾

29) 엄형식,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제76호, 2005.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는 사실 학자별,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다양한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항은 크게 “목적”과 “수단”에 관한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사회적 니즈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목적 하에 긍정적인 사회 변혁과 혁신을 추구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³⁰⁾ 한편, ‘수단’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은 재정적인 자립을 추구하며, 시장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종사한다. 사회적기업은 시장과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며, 경쟁적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감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잉여이익에 대해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민간 기업처럼 이해관계자들과 소유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에 의해 운영된다기보다는 기업 또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³¹⁾

10, 85면.

30) 사회적기업은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동통합형 또는 노동시장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 형태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사회통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칭되는 유형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은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사회통합형과 노동통합형의 두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운영되면서, 명시적인 목적에 따른 세 번째 유형으로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분류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사회적 기능을 노동과 사회서비스로 양분화 할 수 없는 농업, 환경 등 다양한 기능과 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들이 특히 제3세계에 갈수록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남승연·조창현·정무권,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 제3권 제2호, 2010. 8, 149-150면.

31) 최조순,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

요컨대, 사회적기업은 그 목적이 재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혜택 혹은 환경적 이익을 생성하는 데에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인간과 노동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³²⁾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자본주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개인의 물질적 출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리스크, 다양성, 상호의존성이 부족한 반면, 유럽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내의 관계, 삶의 질, 지속가능개발, 인권과 자연, 다원적 협력을 강조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처음 출현한 유럽과 미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도 사회적기업의 출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공통점은 기존 대응방식의 한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 즉, 시장실패에서 정부개입으로 전환한 후 정부실패 및 접근의 비효율성은 새로운 시장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서로 다른 등장배경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

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0-21면.

32) 무하마드 유누스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에 대한 최초 동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스스로가 유용한 존재이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감정과 이를 통해 바람직하게 실현된 노동에 대한 만족감은 강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매우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더욱이 그것은 자원봉사의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며, 협회와 비정부 민간단체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혹은 환경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은 고용인들에게도 이러한 유형의 동기를 고려할 수 있는데, 따라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그 목적으로 인해서만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 http://boite-a-idee.over-blog.com/pages/Quest_ce_quune_entreprise_sociale-1642106.html

업의 활동의 뿌리는 1800년대 중반의 사회경제적 아젠다의 기금조성 수단이었던 협동조합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자선운동이나 비영리활동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했고, 1970년대 비영리기업들이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활동들을 규정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³³⁾

한편, 유럽 내에서도 각국의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크게 영국식과 이탈리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영국식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사회적기업이 영리적 기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복지민영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영국도 전통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전담하며 사회적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제한적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대처정부 시절의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과 사회서비스 제공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블레어 정부 들어서는 정책기조를 영리활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업형 모델로 전환, 현재와 같이 성장했다. 영국식 모델 범주에 속하는 나라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³⁴⁾

반면,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은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는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족과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배

33) 최조순, 앞의 논문, 11면.

34) 홍석빈,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Weekly 포커스, 2009. 5. 6, 45면.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유래는 1844년 부당한 가격을 좌지우지하던 당시 공장주들과 점포소유주들에 맞서 로치데일(Rochdale)의 28명의 남성 근로자들이 28파운드를 모아 가게를 열었던 것이 훗날 현대적 소비협동조합(co-op)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명희, “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33권, 2008. 6, 139면 이하.

경으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이 발달했고 여기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성장해 왔다.³⁵⁾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은 강력한 사회적경제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연합(CGSCOP)은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창업인큐베이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초석이 되었다. 2001년 노동자, 사용자, 자원활동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이를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공익협동조합’(SCIC) 이라는 개방적인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곧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이다.

35) 홍석빈, 앞의 글, 46면.

제 3 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제 1 절 현 황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ESS)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회(사단) 및 재단의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 프랑스 국민 중 1천9백만 명이 건강공제보험 회원이고, 2천2백만 명은 은행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2천1백만여 명은 보험공제조합의 조합원, 1천1백만 내지 1천6백만 명은 결사체의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 4명 중 1명은 사회적경제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는 2012년 기준 약 22만 개의 조직에서 약 2천3백만 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근로자의 약 10.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리고 이들 근로자는 협회 78.6%, 협동조합에 13.1%, 공제조합에 5.4%, 재단에 2.9%로 구성되어 있다.³⁷⁾

<표 2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ESS	ESS 외 사부문	공공부문	전체대비 ESS 비율
사용자 조직	222,912	1,951,075	177,409	9.5%
근로자 수	2,341,346	14,522,071	5,806,435	10.3%
근로 시간	1,969,700	12,965,564	5,330,893	9.7%
총소득 (10억유로)	56.37	449.6	162.5	8.4%

36) CNCRES(Conseil National des Chambres Régionales de l'Economie Sociale), Panorama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 France et dans les régions, Édition 2012. p. 2.

37) Ibid, p. 3.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사단)	재단	ESS전체
사용자 조직	25,871	6,964	188,810	1,267	222,912
근로자 수	306,424	126,125	1,840,864	67,933	2,341,346
근로 시간	287,235	112,663	1,512,600	57,202	1,969,700

출처 : Insee CLAP 2010 - Traitement : Obesevatoire national de l'ESS - Champ : France entière를 CNCRES, op. cit., p. 3에서 재인용.

이들은 장애자를 위한 조직의 90%를 운영하고 양로원의 45%,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³⁸⁾ 그리하여 공익사업의 경우, 전통적인 경쟁적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확고하게 그 위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위에서 언급한 임금근로자의 수는 일자리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며, 협회에서 사회복지활동, 교육, 건강 및 문화 스포츠 활동에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들은 1,800만 명에 달한다. 은행조합, 농산물 가공조합과 상업조합은 30만 명의 임금근로자와 상호공제보험조합은 12만 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보건부터 의료복지요양시설까지 재단들은 7만 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⁴⁰⁾

최근 10여 년간 전통적 경제 하에서 새로운 일자리 비율이 7%인데 반해, 사회연대경제 하에서는 23%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부터 2020년까지 퇴직을 이유로 하는 새로 갱신될 일자리는 60만 개가 될 것이다.

38) <http://www.cncres.org/upload/gedit/12/file/observatoire/Panorama%20national%20ESS%202012%20-%20CNCRES%20basse%20def.pdf>

39) Caroline Lensing-Hebben, op. cit., p. 30-31.

40)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g_id=0&ref_id=ip1390

<표 3 - 프랑스 분야별 협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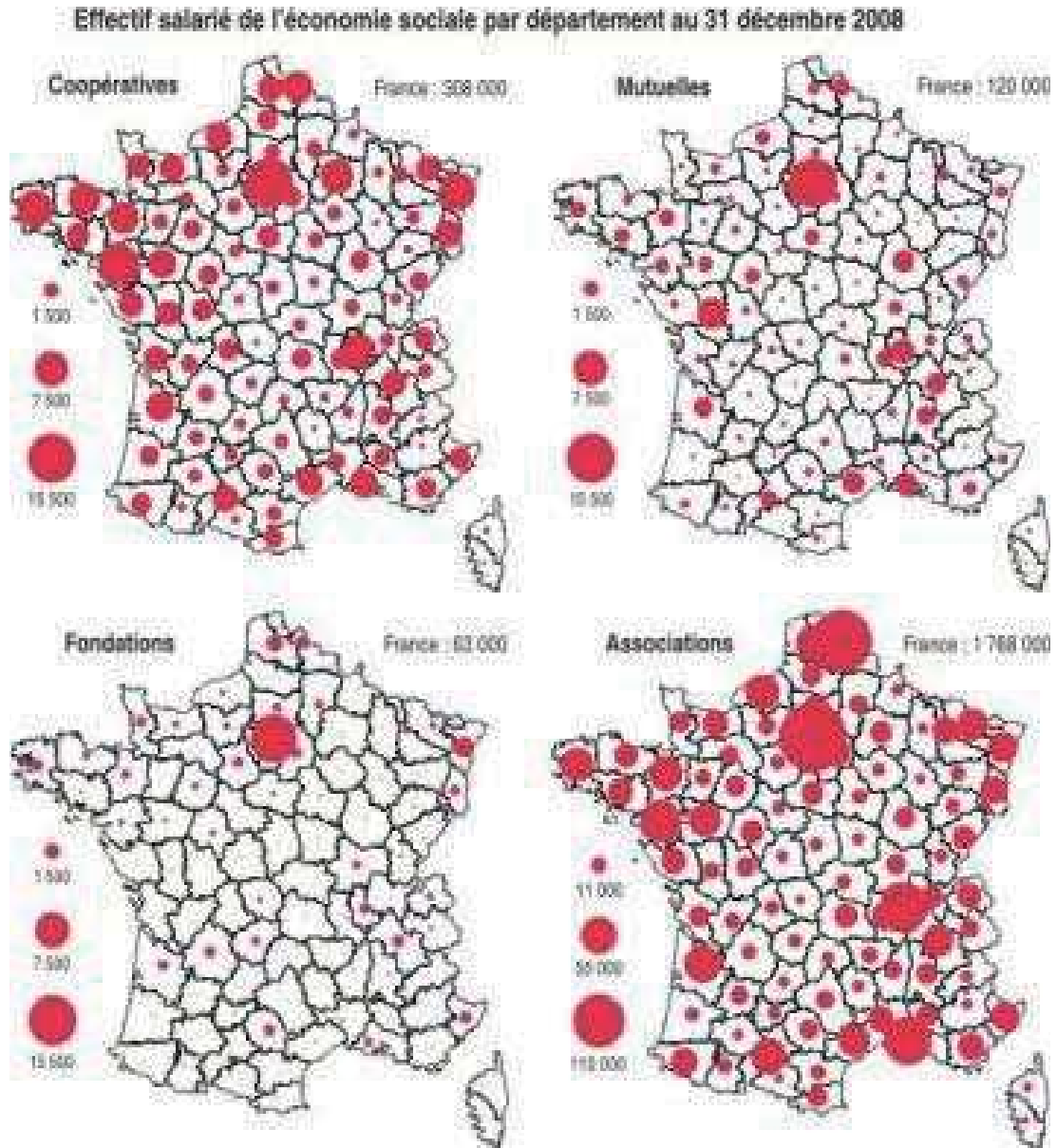
	분 야	협동조합 수	조합원 수	고용인원
기업/ 생산자 조직	장인협동조합	418개 협동조합	5800개 조합기업	3500 일자리
	농업협동조합	농업분야 2900개 협동조합, 기업, 조합		150000 일자리
		12500개 농기계공동이 용조합(CUMA)		
	어업협동조합	130개 협동조합	8000 일자리 제공 2000개 어업기업	2400 일자리
	교통운송기업 협동조합	180개 협동조합 포함 420개 그룹	4200개 교통운송기업 소속	16000 일자리
	소매상인협동조합	75개 그룹		30000 고용주 470000 직원

제 3 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분 야	협동조합 수	조합원 수	고용인원
소비자	소비자협동조합	34개 협동조합	755320 조합원	11547 일자리
	사회주택협동조합	170개 협동조합	50901 조합원 6000 세대 임대주택	937 일자리
	협동조합교육협회	53100 협동조합교육 프로젝트	4650000 조합원	
	공동주택 소유자조합	ANCC에 1700 공동주택 소유자조합 가입	60000 세대	450 일자리 8000 자원활동
노동자	직원협동조합	1842개 협동조합	21679 조합원	38326 일자리
다중 당사자	공익협동조합	190개 협동조합	11582 조합원	1726 일자리
금융	협동조합은행	3개 협동조합 은행그룹	2200만 조합원	360805 일자리

자료 : Coop FR, 2012.

<그림 2 - 사회경제부문 기업에 관한 지리적 분포도>
 - 2008년 12월 31일자 도별 사회경제부문의 임금근로자 수 -



역주 : Coopératives - 협동조합, Mutuelles - 상호공제조합, Fondations - 재단,
 associations - 협회

출처 : Insee, Clap 2008.⁴¹⁾

41)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f_id=ip1342

한편, 사회적경제 부문은 수많은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통틀어 5,000명의 임금근로자를 초과하는 규모의 몇몇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⁴²⁾ 그 활동 부문은 엄격한 법적 범위에 따라 제한되어 있지 않는데, 기업의 설립 혹은 감독을 통해 일부 행위자들이 “제3차 산업” 이외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 보건의 “제3차 산업”에서 두 개의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부문의 규모는 비교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은 덜 중요하지만 고용된 인원수는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는 교육부문에서 340,000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의 21%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의 독점적으로 가톨릭교회와 흔히 연관된 협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사회적경제는 오늘날 재활용, 에너지 전환, 협력경제 및 디지털 경제 또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재인식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⁴³⁾

사회연대경제 모범사례

I. Groupe SOS

마약중독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4년에 설립된 ‘Groupe SOS’는 오늘날 그 사업범위를 다양화시키면서 수많은 분야에 걸쳐 활동을 하고 있다(위생, 사회, 의료복지, 교육, 사회동화, 공정무역). ‘Groupe SOS’는 사설부문의 운영방식을 빌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해결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곳은 7000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회 19개, 영리기업

42) 대기업으로는 일-드-프랑스저축금고(Caisse d'Épargne d'Île-de-France), 마시프(Macif), 마이프(Maif), 프랑스적십자(Croix-rouge française), 프랑스신체마비환우협회(Association des paralysés de France) 혹은 국립성인직업교육협회(AFPA: 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s)가 있다.

43) <http://www.economie.gouv.fr/benoit-hamon-presente-projet-de-loi-economie-sociale-et-solidaire>

17개, 기관 270개에서 4억 3천만 유로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다. 약 450여 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80%가 공공기관이다. ‘Groupe SOS’가 지원받는 보조금은 그 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⁴⁴⁾

II. Siel Bleu

‘Siel(Sport, Initiative Et Loisirs) Bleu’는 전문기관에서 생활의존적인 노인과 기업 내 임금근로자에 대해 조화로운 신체적 활동을 통한 공중보건예방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은퇴한 두 명의 스포츠교사가 설립한 동 협회는 임금근로자가 270명에 달하며 다양한 처방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기초질병보험금고, 상호공제조합, 퇴직예비금고 등이 있다. 재정적 의존성에 관심을 가진 협회는 순수기금, 부조, 자본 및 수익을 혼합한 고유의 경제적 모델을 구현했다.

2010년 ‘Siel Bleu’는 4개 나라에 존재하며 프랑스에서는 매주 60000명의 수혜자에 대해 2500개의 기구를 통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쇼카(Ashoka)의 맥킨지(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⁴⁵⁾, 프랑스 사람 전체에게 ‘Siel Bleu’의 사업활동을 일반화시키면서 두 가지 병리학 즉, 탈장과 II형 당뇨병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3년간 150억 유로와 2012년과 2020년 사이에 590억 유로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⁴⁶⁾⁴⁷⁾

III. ADIE(경제주도권협회)

‘경제주도권협회(ADIE, Association pour le droit à l’initiative économique)’는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주창한 소액대출운동 덕택에 은행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영세기업들에게 재정을 지원한다.

1989년 ‘경제주도권협회’가 설립된 이래, 2010년까지 설립된 71,910개의 영세기업 및 92,694개의 일자리에 93,000회의 소액대출을 통해 총 2

44) Caroline Lensing-Hebben, Quelle place pour l’entrepreneuriat social en France?, L’entrepreneuriat social en France, Centre d’analyse stratégique, Rapport & Document n° 56, 2013, p. 34-35.

45) “Quantification de l’impact de l’entrepreneuriat social, Siel Bleu”, 13 janvier 2012, McKinsey/Ashoka, <http://france.ashoka.org/> 참조.

46) 본 수치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분석을 할 가치가 있다. Caroline Lensing-Hebben, op. cit., p. 35, note [2].

47) Caroline Lensing-Hebben, op. cit. 34-35.

억 5,5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재무감독국(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평균 소액대출로서 사안별로 2,500유로를 3년에 걸쳐 대출하며, 이를 통해 1년간 2,500만 유로의 대출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였다.⁴⁸⁾

1968년에 설립된 주택지원수단협력협회(ACMIL, Association de Coordination des moyens d'Intervention pour le Logement)는 특히 임금노동자들을 위해 주택 접근과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할 목적으로 “아이디어 실험실”이 되고자 하였다. 1982년부터 협회는 모든 “보험 업계”의 선두로서 실업연대기금(FSC, Fonds de Solidarité Chômage)을 창설하였으며, 이는 어느 면에서 1981년 ACMIL이 설립한 주택상호부조(MUTLOG, Mutuelle du Logement)를 통한 진정한 실업보험을 창설한 것으로서 1986년에 개시되는 실업보험의 원형이 되고 있다.

1987년, ACMIL은 1%의 기금모집인들이 기대하는 사항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목적에 따라 보장을 하는 첫 번째 상호기금을 조성하였다. 협회는 사망, 노동 불능 및 실업의 경우, 차용자보험과 더불어 이러한 보장을 위한 기금의 전체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1992년에 임시직노사대표(고용주 및 임금노동자)는 임시직원들이 임시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ACMIL에 요청을 하였다. 협회는 “주택 입주허가서”를 새로 마련하였으며 이는 1988년부터 주택사업소(Action Logement)에 의해 발전된 Locapass® 보증서의 원조가 된다.

ACMIL은 보편적 주거급여(Couverture Logement Universelle)의 개념을 창시했으며, 주택소유권의 취득과 임대주택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자 했다. ACMIL은 정기적으로 주택의 다양한 국면에 관한 주제(특히 주택 소유권 취득의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것)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분기별로 서신을 발간하며(La Lettre de l'ACMIL),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2012년에 차용자보험안내서를 발간하였다.⁴⁹⁾

48) Ibid.

49) <http://www.ressources-solidaires.org/Une-definition-legislative-du-perimetre-de-l-economie-sociale-est-annoncee-A-quand-une-definition-legislative-du-perimetre-de-l-economie-marchande>

제 2 절 관련 법제

프랑스에서 “사회연대경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단일법의 형태로서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경제의 법적 형식은 이미 여러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민법, 상법, 공제법, 보험법, 농촌법 등).

그 입법방식은 각 조직에 고유한 법률(협회, 공제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을 갖고 있는 것도 있으며, 관련법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컨대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 협동조합은 상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I.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협동조합은 프랑스에서 19세기 중반에 나타났다. 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은 프랑스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농업단체들을 중심으로 특히 1844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로치데일(Rochdale Pioneers Co-operative)을 모델로 하여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폴레옹 3세는 대규모 산업에서 요구되는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출현에 적합한 법적 방식을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가변자본에 관한 1867년 7월 24일자 법(소위 결사체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합자회사나 유한회사,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권력의 허가 없이 스스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에 따라 출자금이 증감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협동조합을 가변자본회사(société à capital variable)라는 법 형식을 가지는 사단으로 인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

안 일반법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법체계를 찾던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공제 및 신용협동조합들은 가입-탈퇴의 자유 및 이중지위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었다.

1901년 7월 1일자 결사체법 제1조에 따르면, 협회란 ‘1명 또는 다수의 인간이 이익 분배 이외의 목적으로 공동의 인식이나 활동으로 항상적으로 행하는 협약이다. 협회의 유효성은 계약과 의무에 기초한 권리의 일반 원칙에 기반을 둔다’고 되어 있다.

이 정의를 통하여 다음 2가지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 도출되는데, 첫째, 법률적으로 보면 결사체는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이다. 즉, 하나의 “계약”이며, 이는 관련 목적이나 관련 목표가 “결사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또는 사람들의 자유선택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목적은 ‘이익의 배분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비영리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사실상의 회사라고 재인정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협회의 목적 및 목표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국내의 통합을 어지럽히거나 정부의 화합적 체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협회 계약(1901년 법 제3조 이후, 민법 제1108조)은 무효가 된다. 둘째, 비영리인 경우, 원칙에 있어서 결사체는 구성원에게 배당금을 제공할 수 없다. 가령 활동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이익은 협회의 비영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협회 활동의 비영리적 성격이란, 협회의 목적 자체이며 각 구성원이 관여해야 하는 것이다.⁵⁰⁾

50) Thierry Jeantet, 石塚秀雄(訳), フランスの社会的経済, 日本経済評論社, 2006, p. 61-62.

II. 협동조합법

1. 분류 및 체계

1901년 결사채법만으로는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규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생겨날 때마다 각 협동조합의 유형에 맞는 개별법이 제정되었다.

1894년의 「농업신용법」, 1906년의 「농업협동조합법」, 1907년의 「소비조합법」 등이 대표적인 초기 협동조합법들이다.

2. 개별 협동조합법⁵¹⁾

(1) 소비자협동조합

① 일반소비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의 고객인 소비자가 대량의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프랑스 사회경제의 한 축을 차지한다.

프랑스 최초의 소비협동조합은 1835년 6월 24일 미셸-마리 데리옹(Derrion)이 다수의 소비자에 의한 식품의 대량공동구매 원칙에 입각해 설립한 식품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그 후 샤를 지드(Gide)와 님르(Nîme) 학과의 소비협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조직의 정립에 근거한 프랑스 소비협동조합은 고물가에 대응해 소비자의 공동구매를 통한 소비자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1917년 5월 7일자 소비협동조합에 있어 신용의 조직에 관한 법률(Loi du 7 mai 1917 ayant pour objet l'organisation du crédit aux sociétés

51) 이하의 내용은 한정미·이준서·김현희·김정현·김명아,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법제조사 및 분석연구, 기획재정부 용역과제 보고서, 2012, 75-85면을 인용.

coopératives de consommation)은 소비협동조합의 정의(제1조), 활동범위(제2조), 조직 및 관리(제4조~제20조)를 규정해 소비협동조합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소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소비협동조합의 공동구매 및 판매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소유한다.

② 건축 및 주거협동조합

건축 및 주거협동조합에 특유한 일체의 법령은 건축 및 주거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저가의 사회임대주택(HLM)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주로 HLM 조직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규정들로 주택 및 주거법전 제L.422-5조 내지 제L.422-12조와 제L.433-1조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다양한 건축 공사에 관한 1971년 7월 16일자 법률 제 71-579호(Loi n° 71-579 du 16 juillet 1971 relative à diverses opérations de construction) 제1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 및 주거법전 제L.213-1조 이하에 편입되어 있다.

③ 재건축협동조합

전쟁으로 파괴된 부동산의 재건을 위한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1948년 6월 16일자 법률 제48-975호(Loi n° 48-975 du 16 juin 1948 relative aux sociétés coopératives de reconstruction et aux associations syndicales de reconstruction)는 더 이상 사실상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목적을 변경하여 존치할 것이 권유되기도 하였으나, 협동조합은 청산을 선택하였다.

(2) 직업협동조합

① 농업 및 수산업 분야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였던 1972년 6월 27일자 법률 제72-516호는 현재 농촌법전(Code rural) 제L.521-1조 내에 포함되었으며, 1992년 7월 13일자 법률 제92-643호에 의해 일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이 있었다.

사회적경제연합의 일부 활동 발전에 관한 1983년 7월 20일자 법률 제83-657호(Loi n° 83-657 du 20 juillet 1983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 certaines activités d'économie sociale) 제3편은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연합체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의 일부는 1992년 6월 13일자 법률 제41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② 상업, 공업 및 수공업 분야

이 분야는 크게 소매상인협동조합, 생산노동자협동조합, 수공업자협동조합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i) 소매상인협동조합의 경우 1972년 7월 11일자 법률 제72-652호로서 1992년 법에 의하여 개정을 하여 현재 상법전(Code de commerce) 제L.124-1 내지 제L.124-16조에 편입되었으며, (ii)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은 1978년 6월 19일자 법률 제78-763호의 법이 존재하며 그 일부 조항 역시 1992년 법에 의하여 개정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iii) 수공업자협동조합은 1983년 7월 20일자 법률 제83-657호의 제1편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2년 법 제33조 내지 제40조의 신설규정이 이에 편입되고, 2004년 3월 25일자 오르도낭스 제2004-274호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8년 8월 4일자 법률 제2008-776호 제32조에 의한 개정이 있었다.

(3) 3차 산업 분야

이 분야는 은행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협동조합은 위에서 언급한 1982년의 법률 제82-409호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그 후 금융재정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에 편입되어 체계적으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자 원하는 모든 은행은 이러한 법 체계에 따라야 한다.

반면에 입법자는 일정한 은행은 구성원의 성격과 그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은행의 지위에 대하여도 위 통합법전 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으로서만 존재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은행으로 대중은행(Banque populaires), 상호보증금고(Sociétés de caution mutuelle), 상호해상신용금고(Crédit maritime mutuel), 협동신용중앙금고(Caisse centrale de crédit coopératif), 농업신용금고(Crédit agricole), 상호신용금고(Crédit mutuel), 투자신용금고(Caisse d'épargne et de prévoyance) 등이 있다.

프랑스 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 개의 시중 은행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i) 농업신용에 관하여는 농촌법 제5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현재의 금융재정법전 제L.512-20조 내지 제L.512-54조에 편입되어 있는 일련의 규정, (ii) 상호신용에 관하여는 1958년 10월 16일자 오르도낭스 제99-532호로서 현재의 금융재정법전 제L.512-55조 내지 제L.512-59조로 편입되어 있는 규정, (iii) 절약금고에 관하여는 1999년 6월 25일자 법률 제99-532호로서 현재의 금융법전 제L.512-87조 내지 제L.512-93조에 편입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다.

(4) 자유직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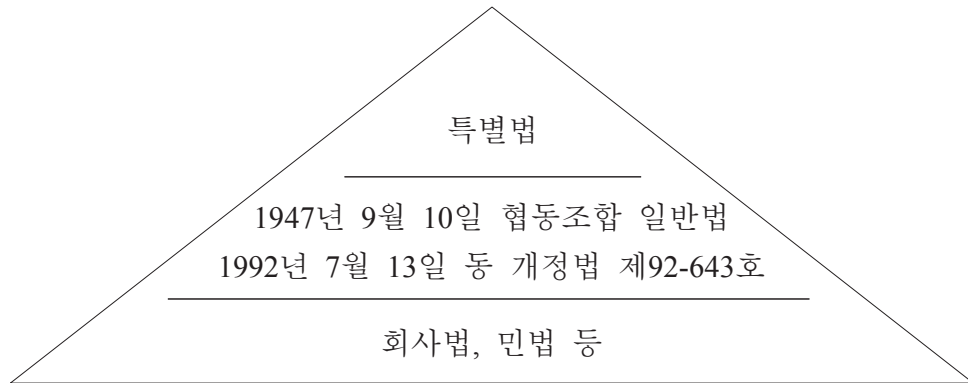
일부의 직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i) 토지측량전문가 단체의 설립에 관한 1946년 5월 7일자 법률 제46-942호는 이들 직업인 간 또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ii) 건축사에 관한 1977년 1월 3일자 법률 제77-2호(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는 제12조에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사는 그들 간 또는 건축사 단체의 다른 자연인과 함께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iii) 2002년 3월 4일자 법률 제2002-303호는 공공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제L.6163-1조 내지 제L.6163-10조까지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의사로 하여금 병원협동조합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자유직업 협동조합은 그 분야의 특별한 규범 없이 창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1977년 건축사법이 건축사는 건축사 아닌 다른 자연인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협동조합을 위 특별법 체계가 아닌 1947년 공통법에 의한 일반법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1947년 협동조합일반법

이렇게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원칙으로서의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47-1775호」(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고유하고 독립적인 법형태가 채용될 수 있었다.

<그림 3 - 협동조합의 법률 피라미드>



출처 : Thierry Jeantet, 石塚秀雄(訳), フランスの社会的經濟, 日本經濟評論社, 2006, p. 49.

우선, 프랑스 법체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 “회사”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자율적(autonome)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지 그 조직과 구성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근거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협의의 기업을 의미하는 회사가 아니며 다양한 가변자본을 운용하는 조직으로 가능한 한 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정되어 온 개별 협동조합법이 이미 산재하여 있던 와중에 1947년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반법에 대응하여 개별 협동조합법들은 특별법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양자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립되었다.

이 법은 협동조합의 목적으로 “협동조합은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임을 천명하면서 “①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가를 인하하거나 또는 기업인 또는 중간업자의

보수부분을 환취하고자 하는 목적, ② 조합원에게 공급하거나 조합원이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물의 생산품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③ 기타 조합원의 일반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들을 교육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47년법 제1조). 이러한 개방적인 목적 하에서 이 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관하여 “협동조합은 그 유형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제2조). 즉, 유형별로 개별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본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일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적용순서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개별 협동조합법은 그 조직과 사업수행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각 협동조합법에만 특수하게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각 협동조합법 간에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개별 협동조합에 공통하는 사항을 따로 떼어낸 것이 1947년 공통법인 것이다.

일반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후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연혁에 있어서 전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1947년법은 일반법으로서, 개별 협동조합에 관한 일련의 법들은 특별법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개별 협동조합법은 1947년의 공통법(일반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협동조합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제 I 부 : 총 칙

제 II 부 : 협동조합의 구성과 관리

제 II-2부 (표제명 없음)

제 II-3부 : 공익협동조합

제 II-4부 : 조합투자증권

제 II-5부 : 조합원증권

제 III 부 : 감사와 제재

제 III-2부 : 유럽협동조합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유럽협동조합의 구성

제 1 절 - 통합을 통한 구성

제 2 절 - 전환을 통한 구성

제 3 장 - 본부(본사)의 이전

제 4 장 - 유럽협동조합의 경영과 행정

제 1 절 - 이사회와 조합장

제 2 절 - 경영진과 감독위원회

제 3 절 - 공통 규칙

제 4 절 - 조합원 자격의 취득

제 5 절 - 총 회

제 6 절 - 법정 회계감사

제 7 절 - 재 심

제 5 장 - 회계의 작성

제 6 장 - 유럽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 7 장 - 유럽협동조합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제 IV 부 : 보 칙

2001년도에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정비된 공익협동조합 관련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익명의 협동조합 또는 가변자본 유한책임협동조합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나타

내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의미한다(제19-5조). 우리나라 및 주요 외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3년의 개정사항은 유럽협동조합을 1974년의 공통법 속에 위치하였다는 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하여 유럽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2003년 유럽위원회의 규정을 반영하여 공통법의 관할 사항이 매우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목차(제Ⅲ-2부)를 구성함으로써 2008년부터 경과규정으로 존재하여 오던 유럽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감독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Ⅲ. 2003년 사회연대경제법(안)

1. 제안배경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결사체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법들을 제정하였고 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협동조합일반법을 1947년도에 제정하였다. 2000년대 초 이러한 협동조합일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익협동조합(SCIC)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제3섹터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입법화 되지 못하고 공익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그친 것이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경제재정부에 신설된 사회연대경제 담당 특임장관의 직을 맡은 브누와 아몽(Benoît Hamon)은 취임 직후인 5월 30일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회기구 및 행정부처가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고

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위원회에서 아몽 장관은 경제성장과 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과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를 단일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화를 위하여 아몽 장관은 (i) 입법화를 위한 관련 경제 분야의 개발지원을 위한 고등위원회의 지원, (ii) 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에의 재정적 지원, (iii)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의 고용확대를 통한 청소년 취업 및 사회연대관계의 촉진이라는 세 개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2012년 9월 5일 올랑드 정부는 2013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사회연대고등위원회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 사회와 환경위원회가 참여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소위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프로그램법⁵²⁾」(Loi de programmation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으로 불리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연대경제의 인정과 적법성

사회연대경제와 이러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주체, 경제목표의 단일성과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 조건의 법적 인정을 하도록 하였다.

② 관련기구 및 공공정책의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의 정의를 하도록

52) 프로그램법(lois de programmation)이라는 용어는 2008년 7월 23일자 헌법개정을 통하여 그 전의 소위 프로그램화법(lois de progamme)을 대체한 것이다. <http://www.senat.fr/rap/108-165/108-16513.html> 이러한 프로그램법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비헌법적인 것으로 선언될 수도 없다고 하여 줄곧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의 활동에 대한 양적·질적 목적을 정하는 완화되게나마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Décision n° 2005-512 DC du 21 avril 2005,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 (학교의 장래를 위한 방향설정 및 프로그램법에 관한 결정)

하고, 공공정책의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의 법적 지위 강화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국가적인 협의체의 정기적 개최를 포함하였다.

③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 규정의 현대화와 상호신용 및 시민단체의 재정 활동에 관한 규정의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프로그램법

제 1 편 : 사회연대경제 인정

본 편의 목적은 사회연대경제를 국내 경제의 한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하의 세 가지 주제를 명시한다.

1. 사회적 기업 라벨의 창설

- 사회적 기업 운동(Mouvement des entreprises sociales - Mouves)에 의해 주창되었고 사회연대경제 장관이 제정한 이러한 라벨은 현재 시민단체, 협동조합, 상호신용 및 기금의 4개 기관에만 부여되었던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더 확대된 분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Mouves의 사무총장인 자크 다누와(Danoy)는 고정 경제 체제에서 사회연대경제 가치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이행하는 기업이 존재하지만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라는 기업형태로 인해 사회연대경제의 구성요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청문회에서 발언했다.⁵³⁾

53) 현재 수립 중인 사회적 기업 라벨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 제도의 주창자인 Mouves가 주장하는 4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활동 및 경제 계획 : 기업의 지속성, 공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고용창출능력
2. 사회 및 기업 목적 : 공공의 일반 이익창출, 사회적 소외층의 욕구 만족, 기업 내 개인의 만족 창출, 환경 보호
3. 무수익 또는 제한적인 수익 : 고유자본으로부터의 급여지급, 급여 투명성 및 급여의 등급관리, 수익의 재투자

- 라벨에 관한 세부조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사회 기업의 범주에 대한 토론에서 급여 차이가 사회연대경제 내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Mouves는 1에서 10등급의 급여 차이를 제안했고, 법률초안은 1에서 20등급의 급여 차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연대경제 고용주 노조 대표성 인정

- 현재 전국 규모의 직업 간 노사협의회에서 상호신용보험, 위생 및 다수직업군 고용주노조가 제외되었지만, 이 법은 해당 고용주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3. 사회연대교육 교과 계획

- 현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교과 내용이 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 2 편 : 공공기관 및 공공정책 인정

위 제1편 규정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공공기관과 공공정책을 인정하며 특히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창설을 규정한다.

공권력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구 간의 최선의 계약 관계를 규정한다. 국가적 지원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준수와 일반이익의 사회적 서비스 보호도 규정한다. 해당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이 법률은 마찬가지로 사법 체제를 설립한다. 시민단체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시행되는 입찰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 또한 대리위임제도에 관한 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제 3 편 :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안

1.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 4. 민주적이며 근로자 참여경영 : 자본 참여에 따른 결정절차, 기업의 지역적 기반 소유 여부

- 근로자에 의한 기업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중간 형태의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위 협동조합은 과반수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과반수 자본금 확보까지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투표권의 과반수를 부여한다.

2. 시민단체증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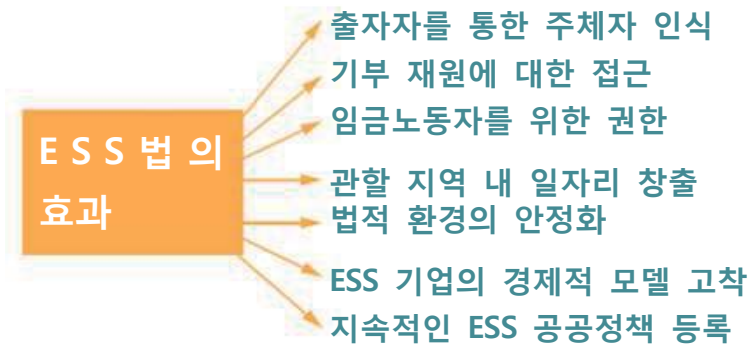
- 기금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단체의 경우, 증권 발행을 통한 투자 및 재정지원을 허용한다. 1985년에 창설된 시민단체증권은 현재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 법을 통하여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작성된 법률의 초안에 대하여 아몽 장관은 9월 24일 개최된 사회연대고등위원회에서 (i)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확립, (ii) 사회연대경제 정책 및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설립 및 운영, (iii) 사회연대경제 기업 설정 담당기구 설립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iv) 협동조합 모델의 현대화, (v) 사회연대경제 담당 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요구하였다.

그 후 그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대표하는 임금노동자 10%에게 특히 경제발전의 고착화를 위한 본질적인 도구를 부여하고, 특히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유용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부여하면서 경제 부문의 중요한 위치를 재인식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구체화시키고자 (i) 사회연대경제의 재인식, (ii) 사회연대경제의 구조화, (iii) 사회연대경제 발전화를 목표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제출하기에 이른다. 즉, 협동조합 또는 협회의 기여도가 최근에 진보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법적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연대경제의 범위를 한정하여 단순하게 구성한 법적 체제가 현대화되고 공공정책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법률안과 무관하게, 현재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는 20만 개 기구, 즉, 협회, 협동조합, 상호부조, 기금 및 사회적기업에서 8분의 1이 민간기업으로서 이미 임금노동자가 240만 명에 달한다. 최근 10여 년간 전통적 경제 하에서 새로운 일자리 비율이 7%인데 반해 사회연대경제 하에서는 23%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재부터 2020년까지 은퇴로 인해 퇴직을 이유로 하는 새로 갱신될 일자리는 60만 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⁵⁴⁾ 모든 경제주체가 이 분야에서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고 시금석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⁵⁵⁾ “사회연대경제” 법률안, 소위 ESS법안은 잠재적 경제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고용을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⁵⁶⁾

<그림 4 - ESS법(안)의 기대효과>



54) <http://www.economie.gouv.fr/benoit-hamon-presente-projet-de-loi-economie-sociale-et-solidaire>

55) <http://www.ressources-solidaires.org/Une-definition-legislative-du-perimetre-de-l-economie-sociale-est-annoncee-A-quand-une-definition-legislative-du-perimetre-de-l-economie-marchande>

56) <http://www.economie.gouv.fr/benoit-hamon-presente-projet-de-loi-economie-sociale-et-solidaire>

2. 체계 및 주요내용

현재 논의 중인 ESS법은 기존의 법과는 달리 ESS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사회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제조합회사나 association의 경우 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운영의 확대발전에 장애가 있으므로 공적자본을 투여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조치, 협동조합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신규협동조합은 인정함과 동시에 협동조합리뷰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주적 운영 및 경영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인수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영노동자’라는 새로운 법적지위를 도입하고자 한다.⁵⁷⁾

2013년 4월 26일자 사회연대경제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du 26 avril 2013)

제 1 편 공통규정

제 1 장 정 의

제 1 절 (제목없음)

제 2 장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

제 1 절 사회연대경제전국협의회(CNESS)

제 2 절 사회연대경제기업 헌장

제 3 절 사회연대경제의 지역정책

제 4 절 사회연대경제 최고회의(CSESS)

제 5 절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CRESS)

제 6 절 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 전국평의회(CNCRESS)

제 3 장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

제 1 절 사회적 유용성이 인정된 연대

제 2 절 재정조직의 지원

57) 김신양, 앞의 워크숍 자료, 52-52면.

- 제 3 절 공공관리
- 제 4 절 공적 지원
- 제 5 절 지역의 부수적인 조치

제 2 편 기업의 임금노동자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 제 1 절 임금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재매수
- 제 2 절 양도 의사의 통지
 - 제 1 관 기업위원회 참석 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의 인적 정보전달
 - 제 2 관 수임인이 참석 시, 근로자수 11인 내지 50인 기업의 인적 정보전달
 - 제 3 관 직원 대표에 대한 통지 및 자문의 내용 및 방식
 - 제 4 관 직원 대표의 자문 후 또는 그 부재 시, 고용주의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보전달

제 3 편 협동조합법 관련 규정⁵⁸⁾

제 1 장 협동조합 공통규정

- 제 1 절 협동조합 모델 개발
- 제 2 절 협동조합 감사

제 2 장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에 적용되는 규정

- 제 1 절 협동참여조합(SCOP)
 - 제 1 관 착수 협동참여조합(SCOP d'amorçage)의 구성
 - 제 2 관 생산노동자협동조합그룹(GSCOP)
 - 제 3 관 협동참여조합에 관련된 기타 규정
- 제 2 절 공익협동조합(SCIC)
- 제 3 절 소상공인협동조합
- 제 4 절 임대주택협동조합(SCOP HLM)
- 제 5 절 수공업협동조합 및 운송협동조합
- 제 6 절 농업협동조합
- 제 7 절 농업자재이용협동조합(CUMA)
- 제 8 절 해양협동조합
- 제 9 절 사업고용협동조합(CAE)

58) ESS법안의 제3편이하의 규정은 각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규정의 개정조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으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 제○조의 …를 ……로 개정한다”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 법안의 대부

제 4 편 상호부조법과 관련한 규정

제 5 편 결사체법에 관련된 규정

제 6 편 재단법에 관련된 규정

제 7 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편입에 관련된 규정

제 1 절 [자격]

제 8 편 기타 규정 및 경과 규정

제 1 절 기타규정

제 2 절 경과규정

(1) 입법취지

ESS법안의 가장 큰 의의는 사회연대경제의 의미를 규범적으로 확정하고 공공정책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데에 있다. 즉, ESS법안의 재정조달자로 하여금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모델을 공고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연대경제(ESS)의 개념 정립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 법안에서 정의된 ESS는 전통적 사회경제조직인 협동조합(cooperative), 공제조합(mutual society), 결사체(association), 재단(foundation)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것이며, 그 본질적 개념요소는 (i) 이윤배분의 제한의 원칙과 사회적 목적 추구, (ii) 영리추구의 제한, (iii) 민주적 운영 및 참여 경영 등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조).

본의 규정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창설하는 단일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법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제 3 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I.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상호공제법전 또는 보험법전에 의거한 협동조합 또는 상호공제조합,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공제조직], 1901년 법 기타 필요한 경우 바렝(Bas-Rhin), 오렝(Haut-Rhin)과 모젤(Moselle) 도(道)의 지방 민법전의 적용을 받는 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로서 私法상의 법인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 II.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법상의 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포함된다.
 - 1° 수익 분배 이외의 다른 목적 추구
 - 2° 제2조에 정의한 것과 같은 사회적 유용성(utilité sociale)을 주요한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 3° 다음의 모든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로서,
 - a) 대부분의 이익을 기업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b) 수익 잉여금의 분배는 불가능하다. 기업을 청산할 경우, 본 조항에서 규정한대로 전체 순수자산은 다른 사회연대경제기업에 귀속된다.
 - c)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정관은 운영에 따른 순수 결산수지액 또는 초과이익금의 최대분배율과 의무적 최소 예비비 비율을 규정한 데크레(법규명령)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운영 초과이익금의 분배 한도를 정한다.
- III. 사법상의 법인은 사회연대경제기업적 성격을 공개적으로 인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부속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 1° 본 조항의 I 또는 II에 명시한 조건에 부응한다.
 - 2° II의 규정에 의거한 기업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관할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 IV. 본 조항의 적용 조건은 데크레(법규명령)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 함은, 주요 목적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2조). 즉,

- 1° 그 사업 활동을 통해 경제사회적 상황이나 장애로 인해 사회와의 동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자들은 동 기업의 임금노동자, 고객, 회원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2° 그 사업 활동을 통해 관할지역 범위에서 사회적 연계 또는 지역의 연대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회연대기업 현장

ESS법안은 ESS기업 현장에 관하여 포함하고 있는데(제5조), 이는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아닌 ESS조직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ESS조직이 ESS조직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⁵⁹⁾

현장에 가입한 ESS조직은 스스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자기 결의 및 자율적 통제 시스템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 기업 전략에 피고용인 조직의 결합, 경제활동 및 일자리의 지역화, 사회적 대화, 노동 안전 및 건강, 고용의 질, 직업훈련, 양성평등, 차별시정, 지속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4) 관할지역 내 네트워크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협동에 있어서 각 “지역”적 터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기존의 지방분권화 제도에 대한 수정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물론 이에 대한 입법평가절차가 아직 남아있기에 지금으로서는 그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각 레지옹이 자체 마스터플랜을 가질 수 있고, 국가와 레지옹간 프로젝트 계약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제1편 제2장 제3절).

59) 김신양, 앞의 워크숍 자료, 54면.

그리하여 이 법안은 ESS의 조직을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연대경제전국협의회(CNESS), 사회연대경제 최고회의(CSESS),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CRESS), 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 전국평의회(CNCRESS)의 각 조직의 임무 내지 사명과 그 구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제1편 제2장 제 4절 이하).

(5) ‘사회적 유용성(social utility)’의 의미로서의 사회적 목적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목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즉, (i) ESS기업의 노동자, 고객, 회원, 수혜자의 사회통합 및 자활지원, (ii) 지역 내 사회관계 강화 또는 지역결속력에 기여, (iii) 지속가능한개발에 기여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의 애매함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즉,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는 ESS의 본질적 핵심을 ‘운영의 민주성을 통한 사회성의 실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및 기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요컨대, 프랑스가 사회연대경제법이라는 통합적인 법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개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흐름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⁰⁾

(6) 다양한 형태의 조직 인정 - 일자리 창출의 적극적 해법

사회연대경제를 다양하게 구성한 법적 체제가 현대화되고, 단순화된다. 즉,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협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공부조

60) 김신양, 앞의 워크숍 자료, 55면.

금에 대한 정의를 새로 적용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합병하기를 희망하는 협회의 경우, 이미 갖고 있는 신임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 이익을 재인식한 협회는 무상공여를 받을 권리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고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된다.

30만 명 이상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8,000개의 협동조합에서 상업협동조합, 수공업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SCOP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지위를 얻게 된다. 법률안은 5년 안에 생산협동조합(SCOP, Sociétés Coopératives et Participatives) 내에 4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한다.⁶¹⁾

또한, 사업고용협동조합(CAE, Coopératives d'activité et d'emploi)을 발전시키는 것은 실업 대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기업가-임금노동자로서 기업의 프로젝트 기안자로서 조화로운 동반적 지위를 누리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92개의 CAE는 5,000명의 기업가-임금노동자를 수용하게 된다. 법률안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매년 새로운 일자리의 60%를 CAE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향후 상호부조는 그들 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든 간에(「상호부조법」 또는 「보험법」) 건강보충보험의 일반화에 따라 법률안 청구 범위에 따라 고용주에게 “상호보험”의 공동 계약을 제시함으로써 상호부조 간에 협력을 기할 수 있다. 상호부조단체, 즉, 보건, 사회 및 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상호부조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부조연합의 새로운 형태를 마련하였다.⁶²⁾

61) <http://www.economie.gouv.fr/benoit-hamon-presente-projet-de-loi-economie-sociale-et-solidaire>

62) <http://www.ressources-solidaires.org/Projet-de-loi-relatif-a-l-economie-sociale-et-solidaire-presente-en-Conseil-des-Ministres>

이러한 다양성에 추가하여 사회연대경제의 부문별 재원조달이 개선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재원에 최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⁶³⁾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 연대기업”의 인가와 같은 “연대기업”에 대한 인가를 좀 더 광범위하게 개방한다. 협회의 재원조달을 위한 “협회 자격” 규정이 현대화되고 상호부조와 기금은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마련한다.

63)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의 500백만 유로, 신규프로젝트 80백만 유로, 사회혁신기금 20백만 유로에 대한 재정지원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제 4 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제

제 1 절 발전과정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기원은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의 공동체적 관계망들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본질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에서부터이다.⁶⁴⁾ 당시 협동조합에 대한 이상은 계급운동적 지향, 민족주의 경향 그리고 실용주의적 지향이 있었다. 1920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좌우익의 농민조직들이 농업협동조합을 각자 구성하였으나, 정부는 이들을 집권당의 정치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자발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관제화 되어 가던 농업협동조합과는 별도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신용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으며,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새마을금고와의 경쟁과 법률에 의한 정부의 감독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신용협동조합 활동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고, 1983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창립되었다(반면에 노동자협동조합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주목받지 못하였다). 1990년까지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

64) 장원봉,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2008. 12. 11, 4면.

구원의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빈민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협동조합 방식이 검토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⁶⁵⁾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상황으로 한국은 사회적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즉, 대규모의 실업이 양산되면서 전국 각지에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민간사회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었다. 각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추진과 시민사회의 자활사업 영역에의 동원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전망을 사회적 기업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 현실화 되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표 - 4 한국 중앙정부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구분	관계 부처	개 념	주요 정책추진내용	목 적	근거법
자 활 공 동 체	보 건 복 지 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 위자가 상호 협력 해 조합 또는 부가 가치세법상 2인 이	- 지역자활센터의 자 활공동체 설립 및 운영지원 - 창업 후 최대 1년 간 수급자에 한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 비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65) 장원봉, 앞의 글, 5-6면.

구분	관계부처	개 념	주요 정책추진내용	목 적	근거법
	(2000)	상의 사업자로 설립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임금 지원	제공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2007)	-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인증제도 도입 - 경영·재정·홍보사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2010)	-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 조치 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기업으로 변경 - 사업비 지원,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식경제부 (2010)	-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잠재 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	- 2010년 6개 중간지원조직과 MOU 체결 및 10개 시범사업 추진 - 8개월간 사업경비 지원	지역 활성화	-

제 4 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제

구분	관계 부처	개 념	주요 정책추진내용	목 적	근거법
농 어 촌 공 동 체 회 사	농 식 품 부 (20 11)	- 지역주민 또는 귀 촌인력이 자발적으 로 참여해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 역의 인적·물적 자 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 자리와 소득을 창 출하고 지역사회발 전에 기여	- 농촌 자립기반 구축 에 초점을 둔 지역 공동체 조직 지원 -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위한 활 동비 지원(최대2년)	지역 활성화	삶의 질 향상 특별 법

출처 : 양동수, “한국 사회적 경제 법제 현황 및 프랑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 2013, 61-62면.

2010년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지자체는 성장전략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⁶⁶⁾ 특히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인 사회적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시도 2011년 이후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계획의 가장 큰 기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66)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100여 개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신설 또는 기존 부서를 전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대상별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방법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양동수, “한국 사회적경제 법제 현황 및 프랑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63면.

제 2 절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 「농업협동조합법」(1967),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기본법」(2012)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직적인 의미 이외에 목적과 실질적인 활동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본연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법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I. 사회적기업 육성법

1. 의 의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로 인한 실업빈곤 해소책 내지 대안적 사회서비스 제공의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민과 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하에 2006년 1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약 6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법 분야의 주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i)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인증기준⁶⁷⁾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ii)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추진방향 및 (iii) 사회적 기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제1조)
(역할 및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 (제3조)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 (제3조)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계획 수립 시행함(제5조)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제5조의2)

67)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제8조) ▪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제18조)
(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지원(제10조), 교육지원(제10조의2)제공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제공 가능
(공공기관의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제12조)
(연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지지 않음(제15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16조)
(보고, 운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제1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제17조)
(진흥원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 설립 (제20조) ▪ 정부의 출연가능,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20조)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제20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제20조) ▪ 유사명칭 사용불가
(권한위임 및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위임가능(제21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가능(제21조)

3. 평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초기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법적 패러다임이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모순이 노정된 사회현실을 변화시키고 개혁의지를 뒷받침하

기에는 부족하였던 데에 반해, 이 법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헌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주목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이익배당도 이루어져 공익적 가치와 사익적 가치가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법제에서 도입하였다는 점을 매우 발전적이다.

다만, 세계 각국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한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면서, “지역공동체의 재건”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 요소보다 저소득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 각종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요하는데, 이를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7개 기준이 엄격하고 취약계층의 고용과 서비스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격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간 개념의 모호성 등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⁶⁸⁾

II. 협동조합기본법

1. 의 의

협동조합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주목받아 왔다. 이는 협동조합이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⁶⁹⁾로서 글로벌 경제 침체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위기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3섹터로서의 역할을 재인식한 것이었다.⁷⁰⁾

68) 특히 사회적기업 개념의 협소함에 관하여는 강정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제20권제3호(2013. 2. 28), 132-140면 참조.

69) ILO, “R193,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s”, 2002, p. 5.

70) 김두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2호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이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이익과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시장경제 발전 모델로서 인식하게 되었다.⁷¹⁾

여기에 2009년 12월 UN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과 이를 위해 각국의 협동조합법제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⁷²⁾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 경제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법은 특별법 형태의 개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복지, 의료, 주택, 교육, 노동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특별법상의 협동조합 설립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도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⁷³⁾

(2012. 8), 3면.

71) 2011년 12월 29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협동조합기본법안(의안번호 : 1814-332)의 제정이유.

72) 김기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합동교육 교재, 2012. 2. 22, 46면.

73) 이는 자활운동·돌봄, 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김두년, 앞의 논문, 4-5면.

이에 그간의 협동조합에 관한 입법적 불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협동조합법 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체계 및 주요 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i) 통일된 협동조합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하고, (ii) 다른 협동조합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시하며, (iii)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2종의 법인격⁷⁴⁾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74)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 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상, 주민권익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출처 : 송경용, “사회적경제의 이해·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중심으로”, 2013. 5.

제 1 장 총 칙	
(법인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제11조) ▪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제11조)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제12조)
(타법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배제 ▪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제 2 장 협동조합	
(의결·선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 1인 1표제(제23조)
(설립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제 3 장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기재부장관)(제71조)
(의결·선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제 4 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장관의 인가(제85조) ▪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적립금)	▪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소액대출)	▪ 사회적 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제94조)
(해산)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
제 5 장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인가)	▪ 기재부장관의 인가(제114조)
제 6 장 보 칙, 제 7 장 벌 칙	
(벌 칙)	▪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제117~119조)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2012. 2. 8, 8면.

3. 평 가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상법상의 상사회사와 민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기타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과 특별법상의 법인 이외에 ‘협동조합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협동조합도 새로운 ‘기업’의 하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법제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복지사회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도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과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 간 협동조합의 정체성의 차이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개념적·법률적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⁷⁵⁾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규범의 모순이나 부작용 내지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예견하여 시행착오의 과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법제 간 충돌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전문가와 실무가 등 관계인이 발전적 모색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75) 전형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1호(2012. 4), 63-77면은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률적 개념’, ‘목적사업의 확대’, ‘설립 및 조직구조 간소화’, ‘1인 독점적 지배 구조’, ‘자본조달’, ‘자기기관 개념 확립’, ‘조합원 카테고리 확대’, ‘자율과 독립 확보’, ‘조직운영의 한계’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흔히 사용되어온 개념은 아니다. 더욱이 유럽의 전통에서 사회적 경제는 법적·제도적 접근, 규범적 접근,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의 접근 등을 통해서 개념화 되어 왔으나,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연합체 등은 한국에서 모두 사회적경제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랜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활동이 시민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⁷⁶⁾⁷⁷⁾

다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확장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되었고, 부족하게나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활동이 추진되어 왔고, 최근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조직들은 노동통합 및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⁷⁸⁾는 점에서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법제에 있어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아직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

76)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을 규정하는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들은 산업정책상 필요에 의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형식으로서 그 체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조직이라기보다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온 측면이 크다. 이대중,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경제센터, 2012, 9면.

77) 국가의 주도적 역할, 왜곡된 근린영역의 영향력, 근대적 시민사회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등장과 함께 아직까지 충분히 변화하지 못한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 간의 갈등 등은 한국 사회적 경제의 특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장원봉, 앞의 책, 16-18면.

78) 김신양·장원봉, 앞의 책, 68면.

은 이유로 인하여 기존의 법이나 제도에 모순이 발생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규범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 비판적 태도로 변화를 서두른다고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사회적경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입법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은 이유도 아직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하는 더 광범한 개념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다.⁷⁹⁾ 그리하여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하여, 이들의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지원, 교육 나아가 인식확산에 관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 많은 비판적 논의가 있는 후라야 비로소 사회적경제법이라는 고유한 법역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벌이는 갑론을박은 오히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ESS법안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본다.

- ① 국민(대중), 경제주체 및 당국의 눈에 맞추어 경제적 모델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ESS의 개념 및 그 범위와 특수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 ② ESS의 경제적 모델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 ③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결사체과 정책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특히 협동조합의 범주에서 ESS의 지원 내지 자원조달에 관한 공공정책을 집약하여 임금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 ④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하여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고, ESS기업을 위한 적립금 활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79) 김신양, 앞의 워크숍 자료, 76-77면.

- ⑤ 공적 수요와 안정적 후원을 통한 재원조달 등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인정하며,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겪어나가게 될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덜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각 경제주체를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경쟁력 있는 경제 단위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분배 역할과 시장의 교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제적 효율은 흔히 무상의 논리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빠진 무성장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구조 내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았고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비영리적으로 분배하는 자체의 목적, 즉 이윤은 재투자되며 조합원이 취득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⁸⁰⁾

다만, 주의할 것은 사회적경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고용악화와 소득불평등으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장의 한계에 대항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의 가능성을 실험

80) Benoît Hamon, Conclusion (du Rapport), L'entrepreneuriat social en France, Rapports & Documents 2013 n°56,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 101.

제 5 장 결 론

하고, 공동체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단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확보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넓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⁸¹⁾

81) 김신양, 앞의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13면.

참 고 문 헌

국 내 문 헌

- 강정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제20권제3호, 2013. 2.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2013. 7.
- 김기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합동교육 교재, 2012. 2. 22.
- 김두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2호, 2012. 8.
- 김명희, “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연구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33권, 2008. 6.
- 김신양, “사회적경제의 이상와 실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충남발전연구원, 2011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자료집, 2012. 10.
- _____, “다른 경제의 희망”, 진보신당 사회적경제 활동가 워크숍 자료, 2011.
- _____, “프랑스 사회연대법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10.
- 김신양·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9. 11.
- 남승연·조창현·정무권,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 제3권 제2호, 2010. 8.

참 고 문 헌

- 노대명 · 김신양 · 장원봉 · 김문길,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2, 2010.
- 송경용, “사회적경제의 이해-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중심으로”, 2013.
- 아달베르트 에베르스, 장-루이 라빌 편저, 자활정보센터 역,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나눔의 집, 2008.
- 양동수, “한국 사회적경제 법제 현황 및 프랑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3. 10.
-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총서 02, 2008.
- _____,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제76호, 2005. 10.
- 원종욱 · 김태완 · 김문길 · 윤문구 · 엄형식 · 윤시몬 · 임완섭 · 정은영,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44, 2012.
- 이경수,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ILO 사회연대경제아카데미의 2011년 간행물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Our common road towards Decent Works의 제1장 번역본),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7-1,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3. 4. 30.
- 이대중,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경제센터, 2012.
- 장원봉,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2008. 12. 11.
- _____,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 장-루이 라빌 저, 김신양 역, “유럽의 사회적 · 연대의 경제”, 2000, 11.

- 전형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0집 제1호, 2012. 4.
- 정관영,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희망경제론」, 공동체, 2013, 1.
- 정태인 · 이수연,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미디어, 2013.
- 최석현 · 김군수 · 이재광,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73호, 2012. 11. 21.
- 최조순,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한정미 · 이준서 · 김현희 · 김정현 · 김명아,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해외법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2.
- 홍석빈,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Weekly 포커스, 2009. 5. 6.

외국문헌

- Benoît Hamon, Conclusion (de Rapport), L'entrepreneuriat social en France, Rapports & Documents 2013 n°56,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3.
- Caroline Lensing-Hebben, Quelle place pour l'entrepreneuriat social en France?, L'entrepreneuriat social en France, Centre d'analyse stratégique, Rapport & Document n° 56, 2013.
- CIRIEC(Centre international de recherches et d'information sur l'économie publique, sociale et coopérative, L'Économie Sociale dans l'Union Européenne, N° CESE/COMM/05/2005 Comité économique et social européenne, 2007.

참 고 문 헌

Francis Vercaemer,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treprendre autrement pour la croissance et l'emploi, Rapport sur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avril 2010.

ILO, "R193,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s", 2002.

Pierre Moscovici, Benoît Hamon, Projet de loi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République Française, 2013.

Thierry Jeantet, 石塚秀雄(訳), フランスの社会的経済, 日本経済評論社, 2006.

웹사이트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f_id=ip1342(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g_id=0&ref_id=ip1390(프랑스 통계청)

<http://www.cooperatives.go.kr/>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http://boite-a-idee.over-blog.com/pages/Quest_ce_quune_entreprise_sociale-1642106.html

<http://www.senat.fr/rap/108-165/108-16513.html> (프랑스 상원)

<http://france.ashoka.org/> (아쇼카 사회적 기업)

<http://www.economie.gouv.fr/benoit-hamon-presente-projet-de-loi-economie-sociale-et-solidaire> (프랑스 경제부)

<http://www.ressources-solidaires.org/Une-definition-legislative-du-perimetre-de-l-economie-sociale-est-annoncee-A-quand-une-definition-legislative-du-perimetre-de-l-economie-marchande>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language=EN&reference=P6-TA-2009-0062>

<http://www.cncres.org/upload/gedit/12/file/observatoire/Panorama%20national%20ESS%202012%20-%20CNCRES%20basse%20def.pdf>

<http://www.oecd.org/cfe/leed/17017950.pdf>

부 록

**부 록 I : 사회적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의회
결의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부 록 II : 프랑스의 2013년 4월 26일자 사회연대경제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부 록 I

사회적경제에 관한 2009년 2월 19일 유럽의회 결의문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일 반

1. 사회적경제는 수익성과 연대를 통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경제, 지역의 화합을 강화하고 사회 자본을 창출하고 능동적 시민 의식과 연대, 인본을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를 담은 경제 형식을 증진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경제, 기술 혁신을 지원하여 유럽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2. 사회적경제는 산업민주주의 및 경제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상징적으로나 성과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사회적경제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전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의 특수성과 풍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정치적, 입법적, 경영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은 다른 일반 기업과 동일한 경쟁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고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안정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5.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제도는 일부 민간 기업이 주주나 규제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의 투기에 대한 노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인정

6. EC조약과 유럽협력사회 법령을 통해 기업 형태의 다양성이 인정되었음을 인정한다.

7. 집행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을 밝힌다.

8. 집행위원회가 신설 정책에서 사회적경제를 증진하고, 법률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고유의 특징이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동기로 촉진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라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촉구한다.

9.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경제와 그 이해관계자, 즉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 조합, 재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그 대책으로 공제 및 세금 감면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마이크로 크레딧의 개발, 조합과 재단, 상호공제조합에 적용되는 유럽 법령의 제정 뿐 아니라 시장 및 비시장 부문에서 활동하고 사회적 효용을 위해 창설되는 사회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EU기금과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제시한다.

법적 인정 : 조합과 재단, 상호공제조합에 대한 유럽 규정

10. 사회적경제 기업이 「역내시장법」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 재단에 대한 유럽 규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럽 조합에 대한 법령과 유럽 공제조합에 대한 법령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COM(1991)0273)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 철회는 유럽연합 안에서 이러한 사회경제 형태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로 보아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연구프로그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1. 집행위원회는 2008년 말까지 발표하여야 할 유럽재단에 대한 규정의 타당성 보고서를 추진하고 유럽조합 및 공제조합에 대한 법령의 영향분석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12.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를 인정하는 법체계를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3.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민간기업이 모든 형태의 업체에서 채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14. 집행위원회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를 이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입안되는 공공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한계를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통계의 인정

15.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국가통계명부 작성을 지원하고 각 제도 및 활동분야별로 국가위성회계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제공되는 역량을 활용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Eurostat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16. 사회적경제의 측정은 비영리 기관(NPI)의 측정을 보완한다고 지적하고,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국가의 회계제도에 속하는 비영리기관에 관한 UN 편람의 이용을 장려하고 NPI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시성을 개선할 위성 회계를 작성하도록 촉구한다.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

17. 유럽연합 부문 및 부문간 사회적 대화에서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사회적 협

의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합하기 위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주체로서의 사회적경제

18.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은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재계의 민주적 기능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며 취약 부문의 적극적인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19. 사회적경제 소속 사용자는 중요한 재통합 주체임을 강조하고 양질의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근로자에 투자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를 지지 및 강화하고 이들의 특수한 지위를 존중하도록 촉구한다.

20. 사회적경제는 3대 노동시장 불균형, 즉 실업과 고용 불안정, 실업자의 사회 및 노동 시장에서의 소외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할 뿐 아니라, 고용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탈국지화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는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1.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는 사회정책을 입안하는 지역사회 및 당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연대 네트워크에 대한 진정한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2. 사회적 문제는 성찰을 촉구하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행동이고, 실제 상황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다수 사회문제는 현지 해법을 통해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조에 관한 엄격한 규칙이 필요한 바, 공공당국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3.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 지역, 국가, 유럽 대표 기구의 관계를 조성하며 사회 통합에 효과적인 EU 지배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EU 차원의 공조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려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4. 사회적경제는 특히 여성고용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무수한 불균형에 대처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조성 및 유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 서비스(예, 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정 및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완전 고용이라는 리스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25. 유럽연합은 이익을 현지에서 재분배 및 재투자하고 적절한 기업 문화를 장려하고 경제활동과 지역의 요구를 연계하고 위기에 처한 활동(예: 공예)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함으로써 다분히 순환경제의 맥락에서 안정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능력을 감안하여 지역과 EU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의제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6. 관할 당국과 동 부문 사업자는 조합과 자원봉사를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양적 관점뿐 아니라 근로와 서비스 공급의 품질 및 조직적 측면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을 평가 및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사회적경제 안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수직통합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27. 회원국 정부와 지방 당국, 동 부문 사업자가 참여와 협의, 공동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와 사용자가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를 장려 및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8.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지원정책을 검토할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조직은 특히 작금의 경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할 뿐 아니라, 금융 및 유통 부문에서 상호성 원칙이나 회사 민주주의, 자산의 세대 간 이전, 준비금과 연대, 직업윤리, 기업윤리의 불가분성을 토대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정과 같이 국가 회사법이나 회계 규정을 차단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9.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은 역내시장에서 활동하고 국가 및 EU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영세기업이나 소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들이 유럽연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 시 기업을 근로자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대상 지원과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30.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금융지원과 정보, 자문, 교육을 제공하는 예비 및 기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립 과정을 간소화하여(회사설립의 최초자본요건의 완화 포함) 이들이 갈수록 세계화되고 있고 현재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1. 사회적경제 기업은 규제 부담을 극복하고 용자를 확보하고 신기술 및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이 대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32. 공익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민관 통합망이 제공하는 부가가치뿐 아니라 특히 자원봉사 형태의 기부를 활용하여 공공당국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웃소싱의 형태 등으로 이용당할 위험을 지적한다.

33.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와 대화 및 해명 작업을 지속하고 공익 서비스 및 사회적 공익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국을 지원하고 ‘결합적 지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

34. 집행위원회는 EU정책을 입안할 때 사회적경제의 특징(목표와 가치, 근무 방식)이 참작되도록 하고, 특히 유럽 「소기업법」(COM(2008)0394)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기업 발전분야의 정책과 전략에 사회경제를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사회적경제가 영향을 받을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사회적경제의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관련기관을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상호 서비스 부서의 설립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5. 집행위원회는 유럽 SME관측소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조사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기능과 발전을 지원하는 대책을 권고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유럽 e-비즈니스 지원망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 및 장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36. 회원국이 보조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지속가능성 강화를 원하는 중소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37. 집행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참가자에게 상설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사회적경제에 관한 현안과 관련될 수 있는 상위 전문가그룹에 참가 및 협력하도록 권유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위원회가 지역,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경제를 대변할 구조를 강화하는 데 참여하고 지역 당국과 사회적경제 기업 간에 적극적인 제휴를 장려하기 위한 법체계를 조성하도록 촉구한다.

38. 집행위원회는 국가 및 공동체 차원에서 공공당국과 사회경제 대표의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조성하고 모범 사례를 장려하도록 촉구한다.

39. 집행위원회는 동 부문 조합이나 사회경제 조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타 금융 서비스가 설립하고 특히 작금의 세계적인 신용금융 위

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독특한 사회경제 단체가 EU에서 이룩한 성과와 이들이 향후 이러한 위험 유형을 회피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협동조합은행에 관한 EU싱크탱크를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40. 집행위원회는 사회경제에 국한된 예산 항목을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촉구한다.

41.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의 실험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7차 기본 프로그램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사회적경제 주제를 통합하여 기본 연구프로그램에 착수하고 공식통계에 적용된 "승수"의 사용을 예상하고 질적, 양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하도록 촉구한다.

42.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공동체 및 국가 정책의 제정과 연구, 혁신, 금융, 지역 발전 및 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EU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척도를 통합하고, EU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개발 및 대외관계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43. 회원국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가치를 토대로 하는 모범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과 대학교, 직업훈련 과정이 포함되는 교육프로젝트를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44.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동 부문의 기술 및 전문서 발전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통합에서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45.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부문과 지방 당국 간에 지역 제휴를 조성 및 유지할 수 있는 EU 법체계를 입안하고 사회적경제를 인정 및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조성하며 공익을 장려할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

46. 집행위원회가 투자자금과 보증대출, 보조금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47. 집행위원회에 아래 사항의 재평가를 촉구한다.

- 유럽 협력사회 증진에 관한 통신과 해당 통신에 규정되는 유럽 협력 사회 법령에 관한 규정(EC) No 1435/2003
- 유럽 자원단체 및 재단의 역할 증진에 관한 통신

48. 본 결의안을 유럽이사회와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부 및 의회,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사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장에게 지시한다.

부 록II

프랑스의 2013년 4월 26일자 사회연대경제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제 1 편 공통규정

제 1 장 정의

제 1 절

- 제 1 조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 2 조 사회유익기업에 대한 정의
- 제 3 조 사회혁신

제 2 장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

제 1 절 사회연대경제전국협의회(CNESS)

- 제 4 조 사회연대경제전국협의회

제 2 절 사회연대경제기업 현장

- 제 5 조 사회연대경제 기업 현장

제 3 절 사회연대경제의 지역정책

- 제 6 조 지방분권화에 대한 수정[평가 중 - 지역경제발전혁신전략(SRDEI)에 ESS포함]

- 제6조의2 사회연대경제지역회의[평가 중]

- 제6조의3 경제적 협동에 있어서의 지역적 중심[평가 중]

- 제6조의4 국가와 레지옹간 프로젝트계약[평가 중 - 행정규칙으로 위임여부]

- 제6조의5 레지옹의 마스터플랜[평가 중 - 법률 또는 시행령 차원]

- 제6조의6 지역발전계약[평가 중 - 법률 또는 시행령 차원]

제 4 절 사회연대경제 최고회의(CSESS)

- 제 7 조 사회연대경제 최고회의의 임무

- 제 8 조 사회연대경제 최고회의의 구성

제 5 절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CRESS)

- 제 9 조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의 임무

- 제10조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의 정관
- 제11조 사회연대경제 지역회의소 협약
- 제 6 절 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 전국평의회(CNCRESS)
- 제12조 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 전국평의회의 임무
- 제13조 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 전국평의회의 정관
- 제14조 사회연대경제 지역사무소 전국평의회 협약

제 3 장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

- 제 1 절 사회적 유용성이 인정된 연대
 - 제15조 “사회적 유용성 있는 연대기업”으로의 인가(“연대”인가의 쇄신)
- 제 2 절 재정조직의 지원
 - 제16조 사회연대경제 공공투자은행(BPI ESS) 및 사회혁신
 - 제17조 사회연대경제 저축금고 및 사회혁신
 - 제18조 신용금고 사업 활동
- 제 3 절 공공관리
 - 제19조 장래 공공조달시장 지침의 전환을 위한 요청
 - 제20조 사회적 책임 있는 공적 구매 전략
 - 제21조 사회적 책임 있는 공적 구매의 지역적 협약
- 제 4 절 공적 지원
 - 제22조 보조금
- 제 5 절 지역의 부수적인 조치(DLA)
 - 제23조 지역적 지원조치에 대한 정의

제 2 편 기업의 임금노동자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 제 1 절 임금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재매수
 - 제24조 상업 또는 수공업 금고에 있어서의 양도의 경우
 - 제25조 회사지분, 주식 또는 동산의 인수
- 제 2 절 양도 의사의 통지
 - 제 1 관 기업위원회 참석 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의 인적 정보전달
 - 제26조 노동법전 제L.2323-19조의 개정
 - 제27조 노동법전 제L.2323-19-1조의 신설
 - 제28조 노동법전 제L.2325-35조의 개정

- 제 2 관 수임인이 참석 시, 근로자수 11인 내지 50인 기업의 인적 정보전달
- 제29조 노동법전 제L.2313-1조의 개정
- 제30조 노동법전 제L.2313-2-1조의 신설
- 제31조 노동법 제L.2313-6-1조의 신설
- 제 3 관 직원 대표에 대한 통지 및 자문의 내용 및 방식
- 제[평가 중 - 입법사항 여부]조
- 제 4 관 직원 대표의 자문 후 또는 그 부재 시, 고용주의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보전달

제 3 편 협동조합법 관련 규정

제 1 장 협동조합 공통규정

제 1 절 협동조합 모델 개발

- 제32조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의 현대화
- 제33조 배타성 원칙에 대한 예외
- 제34조 비조합원으로서 가능한 출자의 성격
- 제35조 사업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신설 가능성 및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동 연합회 서비스의 직접적 혜택 부여 가능성
- 제36조 조합원의 제명 허가
- 제37조 총회에 협동조합 사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의 기준 제시
- 제38조 총회를 위한 원거리 투표 가능성
- 제39조 형법 적용규정의 폐지 및 협동조합 자격의 의무적 명시 제한

제 2 절 협동조합 감사

- 제40조 협동조합 감사에 대한 개정

제 2 장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에 적용되는 규정

제 1 절 협동참여조합(SCOP)

제 1 관 착수 협동참여조합(SCOP d'amorçage)의 구성

- 제41조 외부 투자자가 자본 과반수 이상 소유 가능
- 제42조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의 투자자가 조합 지분의 재매입을 위해 잉여금(보유금) 이용 가능

제 2 관 생산노동자협동조합그룹(GSCOP)

제43조 생산노동자협동조합그룹

제 3 관 협동참여조합에 관련된 기타 규정

제44조 협동참여조합의 주요 명칭

제45조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의 단순주식회사(SAS) 형식 채택 가능

제46조 “협동참여조합” 명칭을 등록부에 기재 누락한 경우 생산노동자협동조합(SCOP)의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보완

제 2 절 공익협동조합(SCIC)

제47조 공익협동조합의 단순화주식회사(SAS) 형식으로의 추진 허가

제48조 공익협동조합의 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의

제49조 기업의 전환에 있어서 공익협동조합 전환의 용이성 촉진

제50조 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통한 협동조합 사업계획발전에 관한 정보공개

제51조 공익협동조합 및 향후 일자리(emploi d'avenir)

제 3 절 소상공인협동조합

제52조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의해 창설된 금융협동조합원에 의한 통제 보장

제53조 e-commerce상의 영세상인협동조합의 목적 확대

제54조 배타성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제55조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유한책임회사(SARL)에 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회사형태의 확대

제56조 조합원이 양도의사를 가진 소상공인급고의 재구매를 위하여 양도인과의 협상하는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

제 4 절 임대주택협동조합(SCOP HLM)

제57조 사회경제조직으로서의 임대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 확대

제 5 절 수공업협동조합 및 운송협동조합

제58조 특수한 우선적 지분을 보상하여 협동조합의 고유기금 확대 가능성

제59조 수공업 및 운송협동조합의 조합 대리인에 대한 보상

제60조 일반적 상업정책을 허가하여 수공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제61조 보유 자본금과 관련한 조합원의 책임 제한

제62조 조합원에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잉여금 이월 금지

제 6 절 농업협동조합

제63조 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요 전체를 충족시키는 필수품 공급을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허가

제 7 절 농업자재이용협동조합(CUMA)

제64조 주민 3500인 이하의 지자체(꼬뮌)에 대한 농업사업, 농촌정비 및
제설작업을 집행하는 농업자재이용협동조합의 가능성

제 8 절 해양협동조합

제65조 보상위임회사에 대하여 협동조합 행정을 거치는 시간의 보상

제 9 절 사업고용협동조합(CAE)

제66조 1947년 법률에서의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정의

제67조 노동법상의 사업고용협동조합에 있어서 경영자 및 근로자의 지
위 안정화

제 4 편 상호부조법과 관련한 규정

제68조 공동계약에 관한 상호보험 및 규정[협의 중]

제69조 상호공제단체연합회[평가 중]

제70조 동업자조합(Collèges)의 설립[평가 중]

제71조 상호공제조합원확인서[협의 중]

제72조 상호공제연합회 명예회원

제73조 보험법에 근거한 상호공제[평가 중]

제 5 편 결사체법에 관련된 규정

제74조 결사체의 주식(채권의 발행)[평가 중]

제75조 결사체 간 합병, 상속 및 자산의 일부 출자

제76조 일부 결사체의 무상양수 자격 확대

제77조 공적 이익성 확인에 대한 감사

제78조 결사체의 임대용 건물 소유 확대

제79조 경제이익단체(GIE)

제 6 편 재단법에 관련된 규정

제80조 재단을 위한 사용자지불면제수표의 확대

제81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하여 창설되는 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집
행하는 관련 조직의 주주(가입자, 조합원, 조합대리인)의 권한 확대

제82조 “협회”주식의 발행가능성을 기부 재단 및 기금으로 확대[법무국
의 평가 중]

제83조 기부재단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정비[법무국의 평가 중]

제 7 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편입에 관련된 규정

제 1 절 [자격]

제[]조[평가 중 -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편입위원회(CNIAE)의 업무성과 및 입법일정을 고려하여 결정]

제 8 편 기타 규정 및 경과 규정

제 1 절 기타규정

제84조 에코-조직을 통한 사회적 유익기업의 지원 활성화

제85조 BPHU-PB 14/02/2013 규정을 위한 계열기업 신설

제86조 사회복지 또는 공정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있어서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류의 수집 및 보존의무 부과

제 2 절 경과규정

제87조 법안의 오르도낭스를 통한 해외영토에의 적용

제88조 현행 헌장의 시행 경과규정

제89조 시행일